제2028호

고양시보

2023년 11월 24일(금)

미래를 바꾸는 힘! 고양

차 례

고 시

고양시 고시 제2023-426호	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	1
고양시 고시 제2023-429호	도시계획시설[대로2-13호선(향동동 585번지 가속차로 설치)] 도시관리계획(경미한사항) 결정(변경) 및 사업 시행자 지정 · 실시계획인가 고시	12
고양시 고시 제2023-430호	도로명주소 고시	15

공 고

고양시 공고 제2023-2840호	고양 도시관리계획(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	17

발행 : 고양시 / 편집 : 언론홍보담당관 / (우)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 600) / ☎ (031) 8075-2095 /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

고양특례시

고양시 고시 제2023-426호

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(031-8075-308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. 11. 24.

고 양 시 장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조서 : 변경없음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(변경)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3	201	6	국지 도로	546	오금동 227-4	오금동 233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큰골
변경	소로	3	201	6	국지 도로	553	오금동 458-5	오금동 233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
기정	소로	3	208	6	국지 도로	623	성사동 579-6	성사동 603-18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수역이
변경	소로	3	208	6	국지 도로	623	성사동 579-6	성사동 603-18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
기정	소로	3	211	6	국지 도로	305	성사동 569-5	성사동 579-1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
변경	소로	3	211	6	국지 도로	312	성사동 663	성사동 579-1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
폐지	소로	3	212	6	국지 도로	116	성사동 567-6	성사동 580-12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.)	
기정	대로	2	1	30 ~341	주간선 도로	18,648 (162)	강매동 513	설문동 826	자동차 전용도로	-	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64호 (15.08.07.)	청대골 섬말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130	12	집산 도로	101	소로덕2-590 토당동678-14	대로2-9 토당동654-19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삼성당
변경	중로	3	130	12 ~25	집산 도로	93	소로덕2-590 토당동678-14	대로2-9 토당동652-6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기정	소로	1	109	10	집산 도로	674 (156)	토당동 564-19	토당동 653-2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변경	소로	1	109	10	집산 도로	683 (165)	토당동 564-19	토당동 654-8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폐지	소로	3	292	6	국지 도로	80	토당동 671-33	토당동 671-33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기정	소로	3	300	6	국지 도로	255	대장동 158-3	대장동 161-7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상중대장
변경	소로	3	300	6	국지 도로	255	대장동 158-3	대장동 161-7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기정	소로	3	346	6	국지 도로	52	주교동 1126-2	주교동 1126-2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위아래 독곶이
변경	소로	3	346	6	국지 도로	46	주교동 1126-2	주교동 1126-2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기정	소로	3	352	6	국지 도로	136	내곡동 226-5	내곡동 96-5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안골 뒤꾸지
변경	소로	3	352	6	국지 도로	142	내곡동 226-6	내곡동 96-5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기정	소로	3	362	6	국지 도로	134	행주내동 151-7	행주내동 141-1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새마을 성동
변경	소로	3	362	6	국지 도로	134	행주내동 151-7	행주내동 141-1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.)	
기정	소로	2	398	8	국지 도로	247	삼송동 78-34	삼송동 84-16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삼송
변경	소로	2	398	8	국지 도로	253	삼송동 78-81	삼송동 84-54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
폐지	소로	3	397	6	국지 도로	57	삼송동 84-18	삼송동 84-26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
폐지	소로	3	403	6	국지 도로	33	지축동 766-1	지축동 166-191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
기정	중로	3	166	12	집산 도로	338	화전동 169-62	화전동 174-18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화전
변경	중로	3	166	12	집산 도로	346	덕은동 14	화전동 174-18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
기정	중로	3	168	12	집산 도로	909 (775)	덕은동 54-6	덕은동 9-73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
변경	중로	3	168	12	집산 도로	902 (768)	덕은동 54-6	덕은동 9-73	일반 도로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.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3-201	소로 3-201	•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-연장: 546m→553m (증 7m)	•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 3-208	소로 3-208	• 도로 선형 변경	• 교통광장3(고양JCT) 및 부체도로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 3-211	소로 3-211	•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-연장: 305m→312m (증 7m)	• 교통광장3(고양JCT) 및 부체도로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 3-212	-	• 도로 폐지	• 교통광장3(고양JCT) 반영에 따른 도로 폐지
-	대로 2-1	• 기결정 도로 반영 -폭원: 30~341m -연장: 18,648m(구역내 162m)	•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564호(2015.08.07.)로 결정된 서울문산고속도로(대로2-1호선) 반영
중로 3-130	중로 3-130	• 도로 폭원, 연장, 선형 변경 -폭원: 12m→12~25m(증 13m) -연장: 101m→93m (감 8m)	•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변경
소로 1-109	소로 1-109	• 도로 연장, 종점 변경 -연장: 674m→683m (증 9m) -종점: 토당동653-2→토당동654-8	• 중로3-130호선 변경에 따른 연접도로 변경
소로 3-292	-	• 도로 폐지	• 고양시고시제2023-84호(2023.02.24.)에 의해 어린이공원 254가 폐지되어 도로가 불필요해지고, 소로 1-109호선, 소로 덕2-338호선으로 우회가 가능하므로 도로 폐지 (도로변 필지 전부 동일소유토지)
소로 3-300	소로 3-300	• 도로 선형 변경	• 현황도로 및 도로 지적을 반영하여 도로 선형 변경
소로 3-346	소로 3-346	•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-연장: 52m→46m (감 6m)	• 토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주교동 1126-2번지를 관통하던 도로를 필지 경계부로 위치 조정
소로 3-352	소로 3-352	•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-연장: 136m→142m (증 6m)	• 고양시고시 제2023-84호(2023.02.24.)로 어린이공원 274가 폐지됨에 뜨라 현황도로 및 도로지적을 반영하여 도로 변경
소로 3-362	소로 3-362	• 도로 선형 변경	• 행주내동 143번지 맹지해소를위해 현황도로 및 도로지적을 반영하여 선형 변경
소로 2-398	소로 2-398	• 도로 연장 변경 - 연장: 247m→253m (증 6m)	• 소로 3-397호선 폐지에 따라 공공기여대상구역(기존 공원부지)에 접속되도록 도로 변경
소로 3-397	-	• 도로 폐지	• 고양시고시 제2023-84호(2023.02.24.)로 어린이공원292호가 폐지되고 공공기여대상구역과 인접 필지가 각각 동일소유토지로 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불필요
소로 3-403	-	• 도로 폐지	• 고양시 고시 제2010-228호(10.10.26.)로 통일로(대로1-11호선)가 확폭(35~70m→35~99m)되어 지축동766-173필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 필지로의 진출입도로 불필요
중로3-166	중로3-166	•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- 연장: 338m→346m (증 8m)	• 현황도로와 도로지적을 반영하여 도로 변경
중로3-168	중로3-168	• 도로 연장 변경 - 연장: 909m→902m (감 7m)	• 중로3-166호선 변경에 따른 연접 도로 변경

2) 주차장(변경)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15	수역이3 노외주차장	성사동 580-12 일원	310	감) 310	-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수역이
변경	159	삼성당1 노외주차장	토당동 651-8 일원	2,092	감) 546	1,546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)	삼성당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15	수역이3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 - 면적 : 310㎡	•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564호(2015.08.07.)로 결정된 교통광장3(고양JCT) 반영에 따른 주차장 폐지
159	삼성당1 노외주차장	• 면적 변경 - 면적 : 2,092㎡→1,546㎡(감 546㎡)	• 중로3-130호선 변경에 따른 연접 주차장 면적 변경

나. 공간시설

1) 광장

■ 광장 결정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3	고양JCT	교통광장	원당동 264-4 일원	387,047 (16,860)	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64호 (15.08.07.)	수역이

■ 광장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3	고양JCT	• 기결정 교통광장 반영	•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64호(2015.08.07.)로 결정된 교통광장3(고양JCT) 반영

2) 녹지(변경)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01	청대골섬말1 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636-8 일원	1,092	감) 1,092	-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)	청대골 섬말
폐지	102	청대골섬말2 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632-3 일원	1,032	감) 1,032	-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)	

■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01	청대골섬말1 녹지	• 완충녹지 폐지	• 원당로가 고양시 고시 제2016-139호(2016.06.03.)로 대로에서 중로로 폭원이 축소(25~27m→12~15m)됨에 따라 완충녹지가 불필요하여 폐지
102	청대골섬말2 녹지	• 완충녹지 폐지	• 원당로가 고양시 고시 제2016-139호(2016.06.03.)로 대로에서 중로로 폭원이 축소(25~27m→12~15m)됨에 따라 완충녹지가 불필요하여 폐지

3) 공원(변경)

■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310	화전7 소공원	소공원	덕은동 169-61 일원	2,012	감) 7	2,005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7-5177호 (07.12.17)	화전
변경	5	대장동5 공원	소공원	대장동 122-7 일원	250	-	250	고양시고시 제2018-243호 (18.09.18)	대장동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310	화전7 소공원	• 면적 변경 - 면적 : 2,012㎡→2,005㎡ (감 7㎡)	• 중로 3-166호선, 중로 3-168호선 변경에 따른 연접 소공원 변경
5	대장동 5 공원	• 공원 위치 변경	• 토지 활용성 증대를 위해 대장동122-7번지 경계부로 공원 위치 변경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5.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■ 제1종전용주거지역

구 분	중규모 51		비고
	기 정	변 경	
허용용도	•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 •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 •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 제외,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 •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(제조업소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•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. 단, 연면적 합계 1,000㎡미만) •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 •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 •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•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 •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 •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, <u>일반업무시설, 전기자동차충전소</u> 제외,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 •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(제조업소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•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. 단, 연면적 합계 1,000㎡미만) •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, <u>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</u>) •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 •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
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	

■ 제1종일반주거지역

구 분	대규모 77~79 / 중규모 45~50, 52~72 / 소규모 24~43 / 신규 80~89		비고
	기 정	변 경	
허용용도	•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 •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 •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•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 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•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•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 •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•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·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 (단, 신규 80~89는 유치원 제외) •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 •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 •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•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•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 •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 •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•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 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**자동차영업소, 게임제공업소(단,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허용), 제조판매시설, 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(단, 바닥면적 합계 100㎡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허용),**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•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•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 •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•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·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 (단, 신규 80~89는 유치원 제외) •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 •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 •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•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
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	

■ 자연녹지지역

구 분	중규모 62 / 신규 80~89		비고
	기 정	변 경	
허용용도	•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•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•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•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및 동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) •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•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•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 •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•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 •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•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•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•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•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**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**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•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및 동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) •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•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•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 •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•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 •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•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
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	
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7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: 변경

1 민간부분 시행지침(변경)

<table>
<tr><th>지 침</th><th>기 정</th><th>변 경</th></tr>
<tr>
<td>제14조
(허용용도)</td>
<td>
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할 수 없으며,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.
② 허용용도가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표에 열거된 건축물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으며, 기타 사항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.
③ 도면표시
허용용도(규제) | | A/B | (A 또는 B 용도 허용)
□ 제1종전용주거지역(A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권장용도</th><th>허 용 용 도 (A)</th><th>불허용도</th></tr>
<tr><td>중규모
51</td><td>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</td><td>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
○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 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 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
○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안마원 제외,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
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(제조업소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
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. 단, 연면적 합계 1,000㎡미만)
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
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
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
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</td><td>○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
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할 수 없으며,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.
② 허용용도가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표에 열거된 건축물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으며, 기타 사항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.
③ 도면표시
허용용도(규제) | | A/B | (A 또는 B 용도 허용)
□ 제1종전용주거지역(A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권장용도</th><th>허 용 용 도 (A)</th><th>불허용도</th></tr>
<tr><td>중규모
51</td><td>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</td><td>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
○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 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 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
○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단, 안마원, <u>일반업무시설, 전기자동차충전소</u> 제외,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
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(제조업소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
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. 단, 연면적 합계 1,000㎡미만)
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, <u>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</u>)
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
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
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</td><td>○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지 침</th><th>기 정</th><th>변 경</th></tr>
<tr>
<td></td>
<td>□ 제1종일반주거지역(B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권장용도</th><th>허 용 용 도 (B)</th><th>불허용도</th></tr>
<tr><td>대규모
77 ~
79

중규모
45 ~
50,
52 ~
72

소규모
24 ~
43

신규
80 ~
89</td><td>「건축법
시행령」
별표1
제1호
가목
단독주택</td><td>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
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
○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 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 (동당 6세대 이하)
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
○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
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, 옥외 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
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
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
○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○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· 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 (단, 신규 80~89는 유치원 제외)
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
○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
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
○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</td><td>○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</td></tr>
</table></td>
<td>□ 제1종일반주거지역(B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권장용도</th><th>허 용 용 도 (B)</th><th>불허용도</th></tr>
<tr><td>대규모
77 ~
79

중규모
45 ~
50,
52 ~
72

소규모
24 ~
43

신규
80 ~
89</td><td>「건축법
시행령」
별표1
제1호
가목
단독주택</td><td>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
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
○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 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 (동당 6세대 이하)
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
○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
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, 옥외 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자동차영업소, 게임제공업소(단,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허용), 제조판매시설, 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(단, 바닥면적 합계 100㎡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허용)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
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
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
○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○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· 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 (단, 신규 80~89는 유치원 제외)
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
○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
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
○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</td><td>○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지 침</th><th>기 정</th><th>변 경</th></tr>
<tr>
<td></td>
<td>
□ 자연녹지지역(C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권장용도</th><th>허 용 용 도 (C)</th><th>불허용도</th></tr>
<tr><td>중규모
62

신규
80 ~
89</td><td>「건축법
시행령」
별표1
제1호
가목
단독주택</td><td>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
○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
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, 옥외골프 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
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및 동식물원 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)
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
○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○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
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
○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
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
○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</td><td>○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</td></tr>
</table>
④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보상(용적율인센티브)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
</td>
<td>
□ 자연녹지지역(C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권장용도</th><th>허 용 용 도 (C)</th><th>불허용도</th></tr>
<tr><td>중규모
62

신규
80~89</td><td>「건축법
시행령」
별표1
제1호
가목
단독주택</td><td>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
○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
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, 옥외골프 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
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및 동식물원 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)
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
○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○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·중·고), 바목 도서관
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
○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
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
○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</td><td>○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</td></tr>
</table>
④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보상(용적율인센티브)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
</td>
</tr>
</table>

□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고양시 고시 제 2023 - 429호

도시계획시설[대로2-13호선(향동동 585번지 가속차로 설치)] 도시관리계획(경미한사항) 결정(변경) 및 사업 시행자 지정 ·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85번지 일원의 향동지구 도시지원시설 3블럭 방송통신시설(캐피탈랜드 코리아 제8호 데이터센터) 진출입 가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[도로: 대로2-13호선]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. 아울러, 같은 법 제88조6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고 양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결정(변경) 사유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
결정	대로	2	13	30~35	주간선도로	2,169	덕운동 38-31대	향동동 2-15임	일반도로	경고 제381호 (98.9.23.)	
변경	대로	2	13	30~38.7	가속차로	48.9	향동동 585대	향동동 595도	가속차로		증)60.2㎡

나.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대로2-13호선	ㅇ면적 및 선형 변경 - 당초 : 30~35m(폭원) - 변경 : 30~38.7m(폭원),	ㅇ 향동동585번지 데이터센터 진출입로 가속차로 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보

2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85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- 명 칭 : 대로2-13호선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· 주소

- 성 명 : 캐피탈랜드 코리아 제8호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시그니처타워 9층

라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 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결정	대로	2	13	30~35	주간선 도로	2,169	덕운동 38-31대	향동동 2-15임	일반 도로	-	경고 제381호 (98.9.23.)	
금회시행	대로	2	13	30~38.7	가속차로	48.9	향동동 585대	향동동 595도	가속 차로	-		240.0 ㎡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준공예정일 : 2023. 12. 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“별첨”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“바” 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“라, 바” 항과 같음

3. 관계도면 : “게재생략”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소 유 자		관계인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덕양구 향동동	586	공	1,987.4	38.1	고양시	고양시			
2	〃	585	대	4,271.3	22.1	캐피탈랜드 코리아 제8호 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 투자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산로 100, 9층(수표동, 시그니쳐타워)			
3	〃	596	도	18,484.9	179.8	고양시	고양시			
합계				24,743.6	240.0					

고양시 고시 제2023 - 43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고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13 등 1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 조			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사유
별 지 참 조				

폐지 도로명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별 지 참 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8075-3096~9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11. 2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,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

연번	종 전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도로명주소고시일	도로명고시일	부 여 사 유	비 고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9-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13 (동산동)	2023-11-24	20100126	고양대로 시점에서 20020m에 위치한 도로	
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19-10, 119-9, 119-1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74 (벽제동)	2023-11-24	20090710	휴전선에 인접한 지역 특성 반영	
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19-8, 119-1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78 (벽제동)	2023-11-24	20090710	휴전선에 인접한 지역 특성 반영	
4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4-3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14 (덕이동)	2023-11-24	20090824	옛 철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46 (토당동)	2023-11-24	20090911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6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7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55 (지축동)	2023-11-24	20190531	고유지명 및 유래 인용	
7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4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13-81 (대자동)	2023-11-24	20090710	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바라는 뜻	
8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9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2로 13 (지축동)	2023-11-24	20191101	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	
9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24-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41-11 (도내동)	2023-11-24	20090710	고양시 중앙을 지나는 가장 큰 도로	
1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1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4로 17 (향동동)	2023-11-24	20180525	지명 및 유래 인용	
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

연번	지번 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		해 당 없 음				
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

연번	종전 주소(지번주소)		도로명주소(새주소)	관련지번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	변 경 전	변 경 후				
		해 당 없 음				

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폐지일	폐지 사유	멸실건물 고시일자	법정동	비 고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13-81	2023-11-20	건물 신축	2011-07-29	대자동	
2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14	2023-11-23	건물 신축	2011-07-29	덕이동	

고양시 공고 제2023-2840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

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
2023. 11. 24.

고 양 시 장

□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단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2	4	20	국지 도로	16	대로 1-1	대화동 2707	일반 도로	-		

■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중로2-4	■ 신설 - 연장 16m - 폭원 20m - 면적 331.4㎡	■ UAM 도심지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및 주차장 진입도로 확보

나) 주차장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주차장	노외 주차장	일산서구 대화동 2707	18,082.4	감)15,416.4	2,666.0	고양시 고시 제288호 (2007.07.13.)	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주차장	■ 변경(구역축소) - 면적 : 18,082.4㎡ → 2,666.0㎡ 감) 15,416.4㎡	■ UAM 도심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축소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) 도시공간시설

구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		비고
				위치	면적(㎡)			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J1	J1	18,082.4	1	18,082.4	감) 15,416.4	2,666.0	주차장
신설	H1	H1	18,082.4	1	-	증) 15,085.0	15,085.0	지원시설

2)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
가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■ 국제전시장 및 공공시설

구분	위치	구분	계획내용	
			지정용도	허용용도
기정	J1	주차장	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	■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, 다목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, 아목, 자목, 타목 중 기원, 하목 중 사무소,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장 및 전시장, 운동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의 20% 미만 일 것

■ 지원시설

구분	위치	구분	계획내용	
			지정용도	허용용도
신설	H1	지원시설	지원시설	■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, 바목, 자목, 차목 ■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다목, 아목, 자목, 카목, 하목,너목 ■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■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■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■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

나)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
■ 도시공간시설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	
				건폐율(%)	용적률(%)	최고층수(층)
기정	J1	J1	주차장	80이하	800이하	10

■ 지원시설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	
				건폐율(%)	용적률(%)	최고층수(층)
신설	H1	H1	지원시설	80이하	800이하	10

□ 기타사항

1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2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: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(031-8075-3067)
3. 관련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4. 기타사항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람(안)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